

제42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3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8.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11.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13.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1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1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17.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4)

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9)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3)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9)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4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44.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45.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6.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47.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5)
48.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5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5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5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5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5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6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6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4)
6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7)
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6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5)
6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8)
66.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2)
6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4)
6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0)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7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7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8)
7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7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7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4)

8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4)
8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8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9)
8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0)
8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4)
8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6)
8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8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6)
8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9)
8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9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8)
9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9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9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9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9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1)
9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2)
9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7)
99.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1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5)
10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1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9)
10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9)
1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0)
1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1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10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1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109.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2)
1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1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7)

112.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11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2)
1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1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4)
1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11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1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1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12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12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2)
1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1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12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1)
12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9)
1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12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1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129.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0076)
130. 소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상정된 안건

130. 소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3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14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14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14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14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	14
8.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	14
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14
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14
11.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14
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14
13.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14
1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14
1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1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14
17.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14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18
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18
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4)	18
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9)	18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18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18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18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18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18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18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18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18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3)	18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18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18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18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9)	18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19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19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19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19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19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19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19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19
4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19
44.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19
45.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19
46.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19
47.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5)	19
48.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19
49. 농어업재해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19
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19
5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19
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19
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19
5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19
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19
5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19
5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19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19
5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19
6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19
6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4)	19
6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7)	19

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19
6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5)	19
6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8)	19
66.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2)	19
6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4)	20
6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70)	20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20
7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20
7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8)	20
7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20
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20
7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20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20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20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20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20
7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4)	20
8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4)	20
8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20
8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9)	20
8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0)	20
8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4)	20
8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6)	20
8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20
8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6)	20
8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9)	20
8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20
9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8)	20
9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20
9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20
9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20
9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20
9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1)	20

9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2)	20
9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20
9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7)	20
99.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20
1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5)	
.....	20
10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20
1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9)	21
10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9)	21
1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0)	21
1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21
1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21
10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21
1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21
109.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2)	21
1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21
1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7)	21
112.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21
11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2)	21
1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21
1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4)	21
1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21
11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21
1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21
1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21
12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21
12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2)	21
1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	21

1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	21
12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1)	21
12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69)	21
1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21
12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21
1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21
129.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0076)	22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 바로 그냥…… 개회를 했는데 바로 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에 한 10분 전인가요, 15분 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일명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농림부 수장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송미령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막말과 악담을 폐부었던 사람입니다. 12·3 내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땠습니까?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란 이후의 모습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아직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농림부 직원들에게 문자를……

○정희용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란이 해제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종덕 위원 저 이따가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농림부장관 명의로 농림부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나 그리고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림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빛의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그리고 남태령에서 우리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그 정책들을 정부에 반영하고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책임 농정 그리고 농업의 대전환

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농업 수장으로서의 인사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을, 우리 농업을 전적으로 시장만능주의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이후에 농정을 펼쳐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농림부장관을 유임이라는 형태로 지명하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농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의원실에 전화기가 불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이재명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우리 농민들을, 농업 대전환을.....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마이크 좀.....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아니, 마이크 안 들어오는.....

○정희용 위원 춰지 다 알겠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고.

○정희용 위원 기자회견 하세요, 기자회견, 나가셔 가지고.

○전종덕 위원 아니,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림부장관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예, 이 정도.....

○전종덕 위원 그리고 지금 발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발언하시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서 하시면 됩니다.

○정희용 위원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도 진정하시고.....

이 정도로 하십시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덕 위원 퇴장)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청원 심사기간 연장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및 결의안을 먼저 의결하고 새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의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된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난 5월 8일 자로 이양수 위원님과 김상욱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강명구 위원님과 이만희 위원님이 보임되셨고, 6월 13일 자로 박덕흠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조승환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세 분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명구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정무위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농해수위로 옮겨 와 첫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 동료·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원래 전반기에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당의 사정으로 잠시 상임위를 옮겼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농민과 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위원님들 농업·농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분 관련해서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 지난해 7월 16일 소위 구성, 소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해서 어기구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그간의 관례가 있었는데……

○**위원장 어기구** 소위원회 안건은 나중에 있거든요. 그때……

○**정희용 위원** 아니,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지금…… 이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소위 구성과 소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법안소위가 농림축산식품과 해양수산 분야로 분리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농림법안소위와 예결소위 위원장은 1·2당이 나누어 맡았던 관례가 무시됐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께서 ‘예산은 정부 여당이 강하다. 야당이 강할 수 없으니 배려해 달라’, ‘정부 예산을 심도 있게 야당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도 많이 있습니다.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은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려하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이원택 간사님과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 부분은 인사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승환 위원님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말씀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분 차관님께서 오셨는데요. 새로 임명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두 분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희용 간사님께서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간사 간에 합의가 됐지요, 오늘까지는?

○정희용 위원 오늘은 소위가 안 되기……

○위원장 어기구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된 의사일정 제130항 소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30. 소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26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30항 소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김상욱·박덕흠 위원을 국민의힘 강명구·이만희 위원으로, 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을 조승환 위원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박덕흠·정희용 위원을 국민의힘 강명구·이만희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 정희용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거지요, 간사님?

○정희용 위원 합의라보다는 임시 조치.

○위원장 어기구 예, 임시 조치. 이렇게 일단 임시 조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한 번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8.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11.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13.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1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1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17.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14시28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과 4월 29일 양일간 1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1건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농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점검·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선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의 수립·이행 등을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이용권의 법적 근거와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농식품이용권의 전담기관을 지원하는 등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문금주 의원,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여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지원법안,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 등 이상 7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축산법상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

안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6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박덕흠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동 법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및 제2장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과 제5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은 기존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식품 정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처리를 존중합니다.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4)

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9)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3)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9)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4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4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4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4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5)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5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5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5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5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5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6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6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4)
6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7)
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6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5)
6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8)
66.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2)

6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4)
6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70)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7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7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8)
7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7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7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4)
8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4)
8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8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9)
8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0)
8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4)
8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6)
8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8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6)
8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9)
8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9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8)
9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9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9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9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9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1)
9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2)
9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7)
99.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1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5)
10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1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9)
10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9)
1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0)
1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1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10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1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109.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2)
1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1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7)
112.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11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2)
1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1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4)
1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11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1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1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12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12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2)
1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1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12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1)
12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9)
1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12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1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129.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의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0076)
(14시38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28항까지 11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9항 1건의 결의안 등 총 1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1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 이른바 유해해양생물에 대해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채취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해양생물이 유해한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어업인의 포획 활동만으로는 생태계 교란 수준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의 포획·채취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다이버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사람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도 유해한 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11조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해양조사 및 연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유해한 수준이라 판단되는 해양생물의 포획 시기와 양, 종류 등을 지정하고 어업인이 아닌 스포츠레저 단체 등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 및 지정·관리토록 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해양생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수산업 피해를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좋은 법 제안해 주신 김재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대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2항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과 무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 지역에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있어 북극항로의 현실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로 승격하면서 북극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과 글로벌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북극 항로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대책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의 북극항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극항로 구축은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프로젝트로 약속한 정책입니다. 이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71항까지 5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요약 보고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전용허가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신고만으로 농지 전용이 가능해질 경우 특별재난지역 내 주택 건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및 주거 안정 측면과 국가 차원의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사의 과도한 수익사업 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사업 범위를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도축·출하장려금 등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돈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에이치 활동 활성화에 기여가 큰 교사에게 상훈 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4에이치 활동 외에 교사가 지도하는 다른 교육 활동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제128항까지 2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9항 1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해수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어촌 지역의 생필품 공급 등 경제·사회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의 주체를 소관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으로 구체화하고 위임입법을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대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제정안은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협력을 총괄하고 예타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북극항로는 해운 전략의 측면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실현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입법 체계와 관련하여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해수부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범부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과 이 기본계획이 신설되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극지활동 진흥법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비용 부담 등 제약 요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복원성 승인 대상을 12m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어선의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하여 보험금 수급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실제적으로 보호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법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 등 대규모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 예치 의무화는 부담이 초래되는 것이므로 부과 대상이나 기준 중 중요 사항은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등의 일방적 설치와 관련하여 중국 측에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동일 비례 조치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국회의 지원을 결의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해에서의 구조물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어선의 어로 활동 방해 등이 확대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의 자제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고 중국이 구조물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재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108항까지 3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농식품부 동물·방역 분야와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후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를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안은 박람회장의 적기 조성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국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고 등 의무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 회의 풀더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꼭지를 각각 농림부하고 해수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 아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지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나 다른 위치에서라도 그걸 잘 인지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식료품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음식물 물가가 세계 2위입니다. 스위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그런 수치거든요. 그런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1인당 GDP가 9만 불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한 3만 5000불쯤 되지요.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차기 정부도, 지금 이재명 정부 역시도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비싸 가지고는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첫 번째 일성이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도시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 구입에 대한 것을 그냥 비교하는 것이라서 실은 조금 약간……

○조경태 위원 장관님, 제가 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금빵 아시지요, 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3000원……

○**조경태 위원** 소금빵의 원조가 어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리나라입니다.

○**조경태 위원** 아닙니다.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소금빵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일본에서는 1000원인데……

○**조경태 위원** 아니요. 120엔, 즉 1100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금빵은 3200원에서 3600원 한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빵값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5위 안에 들거든요.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2위라는 것은 극히 살인적인 물가다 이거지요. 이것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유통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경태 위원** 그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것 염두해서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조경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로 해수부장관님, 우리가 그때 해양주권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강조했을 때 동의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선란 1호·2호, 보조시설 1기에 대해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 잘못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것 해수부에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는 예산편성을 왜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상임위원회 도움으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소위에서 잘 안 된 것으로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경태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꼭 지켜 내라고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래서 지금 26년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2차 추경의 정부안에는 또 안 담아 놨어요. 그래서 1차 때는 국회에서 예산을 넣었는데 이게 안 됐고 2차 때는 그래도 정부안에라도 담아내야 되는데 정부안에도 안 담아 놨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게 지금 민생 안정하고 재정 쪽으로 2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꼭지를 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경태 위원** 민생이 평화가 있어야지 민생이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우리 영토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영토 주권 의식이 강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동의합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무지막지한 중국의…… 명백히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왜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안 담아 놨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이것 혹시 고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경태 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한 600억 정도 담아내기로…… 아니, 평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화가 곧 민생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참고로 지금 정부안에 26년 사업으로 72억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7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거기 타당성조사하고 전반적인 것들 설계하고 바로 그다음 해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1차 추경에서는 안 됐으니까 2차 추경에 한번 담아내 보시고요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의지가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지요. 의지가 있었으면 2차 추경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넣었어야지요, 설계비라도.

그래서 자꾸 늦추지 마시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꼭 좀 정부가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2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이번에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농림부의 강형석 차관님 그리고 해수부의 김성범 차관님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길 바라겠고 관련해서 대선 공약들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강형석 차관님 부임하셨으니까, 최근에 우리 지역구인 보성에서 지난 5월에 강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참다래, 키위 재배 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농진청 현장 조사 결과에도 보면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키위 개화기에 결정적 영향을 줘서 착과 불량의 직접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피해 면적이 266ha 중 약 60ha, 전체의 22.5%에 달한 것으로 판단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참다래, 키위는 보성군의 제2 전략 작목이에요. 그래서 지역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요 소득원인데 이런 특수성도 좀 반영, 감안을 해 주시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농림부가 좀 적극적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하고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조사가 완료되면 농업인들 불편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농진청에서는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도 우리 차관님 새로 부임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농가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우 농가가 다음 달에 대규모 집회까지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사로값하고 도축값 등 생산비 절감 그리고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불허를 한우 농가에서 주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농협사료가 최근에 퀸로당 15원, 사료 가격이 올라갔고 인상을 했고 도축 비용도 1만 원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 농협사료 영업이익을 보면 막대한 영업이익을 23년, 24년도에 거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물론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영업이익도 이렇게 많이 나고 어려운 한우 농가를 감안해서 뭐 동결 내지는 오히려 인하를 해 줘도 지금 부족할 판에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협사료 측에서 하반기에 좀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이랑 얘기를 해서 농축산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좀 강하게 해 주시면……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이제 한우법 통과도 됐는데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사로값 인상의 적정성 파악을 해서 우리 한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키위 피해 보상 관련하고 한우 농가 생산비 부담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송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저도 보도 보고 굉장히 좀 이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농림장관으로서 이렇게 유임이 되셨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공감하고 또 국정 운영의 보조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 유임되신 측면에 대해서는 축하도 드리면서 새로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되신 농림장관으로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 이렇게 또 농정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신임 차관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새롭게 22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제가 지역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자체도 지금 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지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 시급성을 잘 못 느끼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러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새 정부의 공약에 보면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그 개정의 방향 자체가 고령화 되신 농민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은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이라든지 처분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농민들의 농지 자산에 대한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걱정들이 크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 농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정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농지법 관련 개정안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양당 간사님에게도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농지법 자체가 아직 한 번도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계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좀 참고해서 좀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농지법과 관련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양당 간사님 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 또 이렇게 해서 연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LH 직원 농지 투기 사태로 인해서 개정된 농지법이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또 제안해 주신 그 법 내용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 지금의 농지법이라는 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에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여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법은 예전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도 누차 강조를 했고 여기 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농촌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농지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원만히 잘 돼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인허가 문제도 뒤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지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농협 같은 데는…… 지역 농협의 현실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 농협의 현실? 아시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 농협도 상당히 여러모로, 그 회원들도 고령화된 상태고요.

○김선교 위원 고령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체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전체 농지법 같은 것을 완화시켜 줘야, 여기 산림청장도 있지만 산지법 같은 것을 완화시켜 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지금 농지에 대해 풀어 줄 수 있는 면적이 몇 ha입니까, 범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저희가 좀 여러 상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김선교 위원** 3ha 미만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3ha 미만인데 그것도 이런 일반에 대한 농어촌도로 이런 것 빼고 제가 알기로는 군도 이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ha에 해당이 되는 게, 그것 완화시키는 게 상당히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전혀 안 돼요. 진흥지역이나 뭐 경지정리지역 같은 곳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상속해 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부 사람들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거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 정말 농촌을 살려야…… 농촌의 인구가 지금 200만 무너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가인구가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가인구 무너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가인구는 200만이 좀 넘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고민을 하고 농지법 같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이것은 되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좀 내 가지고 농업인들이 살 수 있도록,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맨날 고령화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게 접근을 안 하고 있다.

저도 여기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있지만 농지법을 다루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을 안 해요. 한 몇 년 내…… 이것 때문에 들어온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제발 시골에서 돈 좀 쓰고 돌아가시게끔 해 달라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다, 이게.

장관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부지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림부에서 농지법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됐지 않았나요? 이것 작년 12월 말까지 정리하겠다 하고 검토는 충분히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지금도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가능한 한 소위원회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송미령 장관님 유임을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감사합니다.

○**서삼석 위원** 새 정부에서 송미령 장관이 해야 할 역할들을 본인이 알아서 더 잘하시겠지만 전 정부에서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으셔 가지고 새 정부와 국민들,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쌀값이 19개월 만에 겨우 20만 원이 넘어서 가지고, 그것도 오른 것도 아니고 회복 단계에 있는 그런 건데, 그걸 못 참고 또 공매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는 조금 빨라서요.

○**서삼석 위원** 그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새 정부 장관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하여튼 공매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물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쌀값 20만 원이 회복됐다 그래서 소농들, 농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 사고부터 바꾸셔야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총체적 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쌀값 20만 원이 19개월 만에 회복됐는데 그걸 못 참고 공매하겠다는 것이 그게 호들갑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매를 검토한다고만 했고요, 위원님. 여러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정부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휘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유념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유념해 갖고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향후 10년간 쌀 가격의 적정 목표가격을 농림부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한번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강조했던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른 생산 감소로 향후 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양파 가격 문제 지난 수주 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다행히 농림부가 그

걸 받아들여 가지고 1차 안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때를 놓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산자들이나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전년 대비 유독 4·5월 수입량이 3배나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왜 그랬던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3배씩이나 높여서 수입을 하면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농비로 가격이 뛰랄까,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 있는데 수입 물량마저 3배로 해 내면 농민들이 어떻게 견뎌 내겠냐고요. 새 정부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것 안 해 줘요. 유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일부터 잘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불난 지가 3개월이 지난, 그런 산불피해 발생 이것에 대해서 임목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장관한테도 묻고 청장한테도 물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임목 피해에 관련된 문제를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체제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산림청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를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중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는데, 요즘 먹거리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격 안정이 시급하다라는 시중의 얘기들이 있는데 송미령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강명구 위원**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외식 물가……

○**강명구 위원** 외식 물가는 3.2%, 이게 최근 들어서는 계란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계란 가격 많이 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강명구 위원** 한 판에 7000원, 4년 만에 최고치, 1년 전보다 8%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것 같은데 장관님, 계란 가격에 대해서 방법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산란계가 알을 낳는 게 84주까지만 알을 낳는데 저희가 주령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87주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좀 늘리고요. 사실 생산량은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소비량이 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케이지 교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닦 한 마리가, 산란계가 있는

면적이 0.05인데 이것을 0.075로 넓혀야 되는 게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란계 농장 입장에서는 신규 입식할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미리 케이지를 교환하려는 수요가 있어서, 20주가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하니까 이 교체 시기가 좀 맞물려서 약간 소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을 배려해서 케이지 교체하는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당장 오르는 것은 납품단가 인하를 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은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조속히 안정화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명구 위원 유통구조 문제도 있다는 시중의 얘기가 있어요, 담합 문제.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데 농식품부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별다른 혐의랄까 이런 게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달걀 가격 같은 것이 협회에서 고시를 하는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게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구 위원 어쨌든 계란이라는 게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식재료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강명구 위원 어쨌든 계란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가공식품이든 외식이든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테고 국민들 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명구 위원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OECD, 아까 조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간 외식물가 20% 상승했어요.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섰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번 추경안 65%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했어요. 호텔경제론, 어떻게 보면 대국민을 향한 실험을 이제 하시겠다는 건데…… 먹거리 물가 안정이 시급한데 반짝 지원금 이것 줘 가지고 물가 폭등하는, 그런 자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시중에서는요. 먹거리 물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식이나 가공식품 물가는 지금 꾸준히 상승 중이라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서민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되 저는 근본적으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 그러니까 경영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유통을 조금 더 효율화해서 유통 부분에서 비용이 오른 것들을 낮추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조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시간이 많이 안 남아 가지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첫 질문인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원님.

○**강명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병진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님, 유임이 되셔서 기쁘다, 슬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병진 위원** 기쁘다고 솔직히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수입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부의 무슨 본부의 검역을 받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병진 위원** 농산물 사이에 마약류를 넣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아직 증거는 없지만 그런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

○**이병진 위원** 검역본부에서 그런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보고받은 건 없고요. 그런 사이사이에 끼어서 적발된 경우는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김건희 평택항 밀수 의혹,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보도는 봤습니다.

○**이병진 위원** 보도 보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아직.....

○**이병진 위원** 선라이즈 회사라는 게 김건희 일가 회사라는 건 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일가 회사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6월 10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순실 회사인데 김건희 일가가 이 회사를 사서 운영하다가 6월 10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보도 전혀 들은 적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는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선라이즈 사태는 알았지만 그런 보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병진 위원**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것은 경천동지의 대사건도 될 수 있고 특검도 해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을 평택항을 통해서 들여왔다, 밀반입했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지역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역본부 직원들도 수사와 처벌을 막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우인지 몰라도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수입체계 관리에 책임이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진위 파악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된 어떤 것도 좋아요. 우리 의원실도 지금 추적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다음에 장관님, 농민은 얼마의 소득을 해야만이 농민으로 인정을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병진 위원** 농가소득 연평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경작면적, 지금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하거나……

○**이병진 위원** 아니, 농가소득이 3700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매출액 기준으로 120만 원.

○**이병진 위원**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농민이 90일 이상 농사를 지었어도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직불금도 안 주고 관공서에 가서 농지에다가 한 20%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 3700만 원이 언제 정해졌는지 알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바꾸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2007년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당시 아마 통계청의 연평균 가족소득……

○**이병진 위원** 그래요. 연평균 가족소득이 3674만 원이었어요, 그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3700만 원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가구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연평균 가구소득이……

○**이병진 위원** 시간 때문에…… 7000만 원이 넘어요. 이것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치려고 합니다.

○**이병진 위원**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고쳐야지요. 제가 선거 때마다 돌아다니면 농민들의 문제 제기가, 농지법 문제도 있지만 소득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농민은 안 돼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알바 할 수 있거든요. 알바 플러스해 버리니까 다 3700만 원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농민은 부자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라는 이런 원정도 지금 드높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 홀벌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해서 4400만 원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이런 발표도 농림부에서 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지금 연평균 가구소득에 의거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꼭 고쳐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농림부차관님,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마 저기……

○**문대림 위원** 아마요? 아마?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주요 정책은 아마 기본소득이라든지 포함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넓혀서 그 지역 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대림 위원** 기본소득은요 한 아홉 번째인가 열 번째에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제 강화지요. 확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책임농정입니다.

○**문대림 위원** 공부 좀 하세요. 뭘 잘합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합니까, 대답을 잘합니까?

국가책임제 확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농업재해 국가책임 확대, 최저가격 보장 국가책임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확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께서는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차관님께서 말씀하세요. 묻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공약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위원님……

○**문대림 위원**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농정이 하여튼 원칙이고요. 위원님들한테 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정책안을 지금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직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문대림 위원** 봉쇄 의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란 의회에서 봉쇄 의결했지요? 봉쇄 의결했으면 당장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그쪽으로……

○**문대림 위원** 이란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농업 관련 원자재, 어떤 것들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마 인산 정도, 인산이라든지 원재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대림 위원** 어떤 원재료들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비료의 원재료 정도……

○**문대림 위원** 이란에 한 12% 정도 원재료를 의존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뿐만 아니라 어쨌든 카타르 등 중동 다수 국가에 우리가 요소, 원재료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떨 것이고 각종 비료 비용들이 뛰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비료 같은 경우에 이미……

○**문대림 위원** 대책은 언제까지 마련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능한…… 위원님, 비료 같은 경우에는……

○**문대림 위원** 이번 주 내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농민들께서 경영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지원 예산,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예산,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 지원 예산, 이런 예산 등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좀 당차게 붙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문대림 위원** 추경과 관련해서도 농민의 입장에서, 이것 재무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한번 붙어 보시라고요.

그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차관님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어쨌든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앞으로 기재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도 잘 검토를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 농민을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대책을 마련해서 금주 중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수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수부차관입니다.

○**문대림 위원** 축하드리고요.

‘북극항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북극항로에 관한 얘기가 ‘2013년도부터 옵서버 국가로 승격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의 계획과 전략들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홍계획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지적……

○**문대림 위원** 진홍계획 수립하는 내용하고 이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직접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할 역할들이 많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어떻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비상대응반뿐만이 아니고 관계기관 대응을 매일 하고 있고요. 내일 또 제가 주재하는 비상모의훈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원유뿐만이 아니고 벌크선들이 주로 쓰고 있는 항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 주시 보고 있고 특히 국방부하고 협업을 같이하고 있고 외교부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비상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지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선박 안전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기구와 협력도 하시고 외교부와 뭐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새로 부임하신 강형석 차관님 그리고 김성범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임하시는 강도형 장관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하여튼 소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시고.

송미령 장관님은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유임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농정이라는 부분이 연속성을 강조해야 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인사 배경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들과 농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농정을 이끌어 주십사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내년 3월이면 영천 경마장이 1단계 시설 개장이 되고 시범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에 부산경남마주협회 전원이 내년 영천 경마장에 불참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서천호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서면답변을 마사회로부터 받으니까 그냥 뭐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영천 경마장이 개장되는데 실질적으로 참

여할 부산경남마주협회에서 전원 참석 안 하겠다는 결의안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지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 농지법이 고령화돼서 사실 노동력이 없는 농민들은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못하게 강제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임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한 90%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농토를 보유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부분은 소위 법적인 여러 제안을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꼭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돼서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쌀값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시나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6월 15일 자 조사한 것으로는 20만 1800원인가요, 20만 2000원은 좀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서천호 위원** 작년에 올 재배면적을 8만ha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8만ha 중에 어느 정도 지금 감축해서 전환 작물로 대체시켜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모내기 전에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은 면적, 조사된 면적으로는 저희 목표의 한 60%쯤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귀하는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서천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쌀값 안정 부분은 법적 강제보다는 정책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들이 오늘도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농안법과 관련된 농림식품부의 입장이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서천호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강형석 차관님 그리고 김성범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유임으로 발표된 송미령 장관님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들이, 오늘 또 발의가 많이 됐네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10건 발의됐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15건이 발의가 됐고 양곡관리법은 8건이 발의가 되었어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농망법’ 이렇게 거부권을 해 가면서 사실상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서 관철시켰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부권을 사용할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그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 그런데……

○**주철현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감한다. 그런데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주철현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주철현 위원** 아니,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세요. 일국의 장관이신데 철학이 있을 건데 철학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대통령 철학에 바꿔서, 맞춰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꾸실 생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연히 국정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되시면 고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앞뒤가 틀린 정책을 추진해서야 영이 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부작용이 없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정말 안타깝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다음에 해수부 차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극항로법을 저도 추가로 발의를 했는데 마치 북극항로 하게 되면 부산항 중심의, 이렇게만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선종별이라든지 화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균형적인, 균형 잡힌 항만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항만별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하셨어서 지시까지 하셔서 이전되는 것이 당연, 뭐 시간만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전남이 전국의 60% 이상이에요. 해양수산부가 해양운송, 해양항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물론입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수산 분야도 있고 해양자원 개발도, 또 해상풍력은 전남이 제일 많고 또 해양레저관광 부분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압도적이고. 이런

나머지 수많은 해수부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들과 관련되어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도 많고 반발도 많고 일부 수산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해수부에서 너무나 치우친 이런 것으로, 장관까지 부산분이 내정이 되셨던데 걱정이 많아요. 특히 전남에서 수산 분야, 관광 분야, 해상풍력 이런 분야에 걱정이 많은데 이와 관련돼서 해수부에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그런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걸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 저희들 잘 듣고 있고요. 그것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 수립하는 데 하여튼 간에 전남이 최고 지지율을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주철현 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지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역분들 또 업종분들……

○주철현 위원 예,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의견들 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적극적인 대책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꼭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 좀……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우리 방금 송미령 장관께서,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의 농업 민생 4법 대한 ‘농망법’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더니 장관님께서 사과를 한 것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농망법에 관련된 사과를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했다라는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든 어찌 됐든.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 자료제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영천 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남·부산 쪽 마주들의 어떤 움직임도 말씀을 하셨고 그 여러 가지 지역 관련되어 가지고 그간에 마사회에다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진행되는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의원실에서 꼭 한번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충실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대림 위원** 간단한 자료제출.....

○**위원장 어기구**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해수부차관님, 6월 9일부터 13일간 프랑스 니스에서 UNOC가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유엔 해양총회 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참석했었습니까, 우리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장관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문대림 위원** 그 참석했던 내용하고요 향후 UNOC 관련 대응 방안, 이번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갔던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도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자료제출 좀.....

○**위원장 어기구** 예.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께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5억을 통과시켰고 600억 원을 윤준병 예결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통과시켰는데 해수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동안 교섭 과정에 관련된 공문서 주고받은 것 그다음에 참여한 회의, 기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 의원실에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까지 해 주시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간사님 두 분 남으셨는데요. 여야 간사님이 바뀌었어요. 여당 간사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야당 간사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정희용 간사님부터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해수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앞선 위원님 질의에 이란 해협,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비상반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정희용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운업계가 걱정이 됩니다. 해운업계 이미 계약해 놓은 물량들이 있을 텐데 그 물량과 관련해서 지장이 어떻게 있는지 그 업계의 현황을 빨리 청취해 보셔야 된다, 벌크선, 정유 관련한 이런 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배의 운영비 부담이, 해운사의 운영비 부담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전체 바다에서 운영되는 해운업계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원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국내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부분은 타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해운업계의 이야기를 빨리

경청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 항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나 외교부 통해서 다른 항로도 우리가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어가·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장기화됐을 때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한전, 산업부한테 어가·농가에 대한 전기료 지원 방안이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빨리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돼서 엄청 올랐는데 그때 '산업부나 한전하고 협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했는데 아무 얘기한 것도 없고 담당 실무과장님들끼리 이야기 주고받은 것밖에 없고 이래 가지고 그때 돼서 뒤늦은 피해 수습은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하면 이번 추경에라도 넣어 가지고 우리 어려운 어가·농가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수부 업무보고 폐성'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보고 좀 안타까운데 그것 뭐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수산업계, 어려운 어민들의 현황을 새로 신정부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도 이게 군기 잡기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부처 군기 잡는다고 어려운 수산업계 사정을 청취하는 시간이 뒤로 밀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그것은 내일 제가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잘 보고드리고 그 진행 상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국정기획위의 국정 밑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다시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경상북도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청권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의 수도 이전에 대한 그 취지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다를 끼고,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인천, 충청도, 경북, 경남, 남해, 전남, 전북 바다 다 있습니다. 이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는 왜 빼요?

○**정희용 위원** 아, 제주.

○**이병진 위원** 평택은 왜 빼요?

○**정희용 위원** 평택, 경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막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게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원님, 저 마지막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용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 정책부터 수산 정책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농해수위에서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파급효과까지 양과 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론의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정희용 위원** 맞습니다. 찬성 여론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고 찬성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려하는 지자체도 있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어 가면서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다음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마지막 부탁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열정과 소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해 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은 신임 해수부차관과 우리 열심히 뛰고 있는 직원들 독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앞으로 추경 때도 계속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다음, 우리 이원택 간사님 마지막 대체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차관님,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좀 있어요. 우리 김제·부안 지역인데 김제만 한 250ha 이상이 침수가 됐는데 그중에 논콩 지역이 150ha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논콩 재해 인정 기준을 시간을 경과조치로 하지 말고 생육 상태를 중심으로 본다든가 보험 가입 조건을 좀 완화한다든가 또는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또 재해 여부를 전라북도청이 조사하고 있을 텐데 농식품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현장 가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반복이 안 되게 좀 배수 개선 체계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지치고 농민들도 지치고, 아마 이게 도시에서 일어나서 홍수가 났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그런 일 없게 다 조치를 할 텐데 농민들의 영농활동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지 그것 사명감 갖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수 개선 사업도 김제 용암천이 범람해서 그 일대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부안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할당관세 계란값, 쌀값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오자마자 논란이 된

겁니다. 큰 틀에서는 물가 문제인데요. 저희는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최근 10년간 물가에 영향을 준 품목들에 대한 어떤 국내 생산 기반과 생산량을 점검해서 차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그래서 국내 생산 기반이 유지되고 적정 생산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공급망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은 정말 불가피할 때 할당관세를 수입으로 해 와서 처리를 해야지 할당관세를 기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계란을 담합했다고 해서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란의 연간 평균 소득도 한번 보시고 실담합인지, 그 전 건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전 건도 담합이라고 했지만 무죄 나왔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겁주는 방식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

쌀값 부분도 사실 수확기에 농민들의 쌀값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유통업자들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지요.

○**이원택 위원** 도시민들하고 유통업자들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때 제가 수확기에 쌀값 좀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쌀값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공 비축미를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이게 또 다음 쌀값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민주당의 어떤 기본 지향이나 가치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우리 장관님도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쌀값은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납득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납득이 안 되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 당 입장에서, 저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어 온 게 사실이니까 그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 차관님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이게 지금 계속 축소돼 가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이원택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는 25년 계획이 186억으로 수정됐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대상이나 또는 바우처 사업의 대상이나 예산이 축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농식품부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 대선이 끝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철학이나 가치는 지난 3년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곳에서 말해 왔던 어젠다, 과제, 주요 법안의 핵심적 정책들이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다 녹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농식품부 국장님들, 과장님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님, 제가 일전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금년도 총 수급 관련 자료를 받아 봤는데 농림부의 의지를, 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뒷받침 할 만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산이 지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지금 현장의 총 재배 농가들이 적잖이 가슴이 콩만해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노정된 지가 좀 시간이 됐으니까 고민하셔 가지고 소급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삼석 위원** 저희야 당연히 돋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 중에 아까 조경태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서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관련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야 합의가 된 거지요?

○**이원택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129항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08

항까지 91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128항 까지 20건에 대한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조경태 소위원회장을 비롯한 농림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대림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11인)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임미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6)
	강명구 김선교 이만희 정희용	국민의 힘(4)
	전종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해양수산법안심사(7인)	문대림 송옥주 이병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4)
	◎조경태 서천호 조승환	국민의 힘(3)
예산결산심사(9인)	◎윤준병 문금주	더불어민주당(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대림 송옥주 이병진	
	강명구 김선교 서천호 이만희	국민의 힘(4)
청원심사(5인)	이원택 임호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3)
	◎정희용 조경태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서천호 어기구 이만희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출장 위원(1인)

임미애

○첨가 위원(3인)

송옥주 윤준병 조승환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재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정책기획관 김정주

축산정책관 안용덕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해운물류국장 허만옥
정책기획관 권순옥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수산정책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기획조정관 이상호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0)

이상 4건 4월 24일 회부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1)

4월 28일에 회부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9)

이상 6건 4월 29일 회부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1)

4월 30일 회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농어업회의소법안

(2025. 4. 30.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8)

이상 12건 5월 1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5월 2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이상 3건 5월 7일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이상 2건 5월 8일 회부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3)

이상 2건 5월 9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2)

5월 12일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이상 7건 5월 13일 회부됨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5. 13.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3)

5월 14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1.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이상 2건 5월 22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6.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5월 27일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9)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5. 2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0)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4)

이상 4건 6월 2일 회부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이상 2건 6월 9일 회부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6월 10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6월 11일 회부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이상 2건 6월 12일 회부됨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5)

이상 2건 6월 13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1)

이상 5건 6월 16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6월 17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2)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2025. 6. 17.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이상 3건 6월 18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이상 3건 6월 1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이상 6건 4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7)

이상 2건 5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8)

5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5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이상 4건 5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2025. 6.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54)

6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6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농어촌 빙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1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9)

농어업회의소법안

(2025. 4. 30.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이상 19건 6월 1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2	-	-	14	2	2	20
해양수산부	5	-	3	67	21	12	108
농촌진흥청	-	-	-	4	5	1	10
산림청	1	-	-	2	1	-	4

58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6월23일)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해양경찰청	-	-	1	-	4	-	5